

교직원 복무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8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6.6.16)</p> <p>1. (생략) 2. (생략) 3. 직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호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4. (생략) ②~③. (생략) (신설)</p> <p>(신설)</p>	<p>제18조(연차휴가) ① 직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u>제60조에</u>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0.3.1.)(개정: 2016.6.16)</p> <p>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3. (삭제)</p> <p>4. (현행과 동일) ②~③. (현행과 동일) <u>④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 19 조 및 제 22 조에 의한 휴가기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 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u></p> <p><u>제 18 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u> <u>근로기준법 제 61 조에 따라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 60 조 제 7 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대학은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u></p> <p><u>1. 연차휴가 사용기간 종료 6 개월 전을 기준으로 10 일 이내에 사용자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u> <u>2. 제 1 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 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 제 7 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 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u></p>	<p>조문 명확화</p> <p>관련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3항 삭제)</p> <p>관련법령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신설)</p> <p>현행화 (근로기준법 제61조)</p>
<p>제20조(공가)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5. (생략) (신설)</p>	<p>제20조(공가) 이사장 또는 총장은 교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허가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동일) <u>6. 「산업안전보건법」 제 43 조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u></p>	<p>건강검진 근거마련</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1조(특별휴가) ①~③. (생략) ④ <u>이사장 또는 총장 표창을 받은 교직원</u>은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u>훈장·포상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거나, 20년·25년·30년 근속표창을 받은 교직원</u>은 6일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21조(특별휴가) ①~③. (현행과 동일) ④ <u>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직원에게 이사장 또는 총장은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u> <u>1. 이사장 또는 총장 표창을 받은 교직원: 3일 이내</u> <u>2. 「상훈법」에 따른 훈장·포상 및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교직원: 5일 이내</u> ⑤ <u>교직원은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한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근속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u> <u>1. 10년 근속: 3일</u> <u>2. 20년 근속: 5일</u> <u>3. 30년 근속: 5일</u> ⑥ <u>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교직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교직원은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u> ⑦ <u>자녀가 있는 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u> <u>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 2 조 각 호의 학교(이하 이 항에서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u> <u>2.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u> <u>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 52 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조 및 제 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u></p>	<p>경조휴가일수표 개정</p> <p>근속휴가와 근속표창을 분리 운영</p> <p>난임휴가 신설</p> <p>자녀돌봄휴가 신설</p>
<p>제22조(산전·산후휴가) ①~② (생략) ③ (생략) 1. 유산 또는 사산한 <u>근로자</u>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생략)</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u>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u></p>	<p>제22조(산전·산후휴가) ①~② (현행과 동일) ③. (현행과 동일) 1. 유산 또는 사산한 <u>교직원</u>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현행과 동일)</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며, <u>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교육공무원</u></p>	<p>용어 수정</p> <p>사학연금 가입교직원의 산후 무급급여를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여 유급으로 지원</p>

현행	개정(안)	비고
<p>지급의 책임을 면한다.</p> <p>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p>⑧ (생략)</p> <p>제23조(배우자 출산휴가)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p> <p>제2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에 따라 시행한다.</p> <p>(신설)</p>	<p>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p> <p>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교직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p> <p>⑥ (현행과 동일)</p> <p>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교직원이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p> <p>⑧ (현행과 동일)</p> <p>제23조(배우자 출산휴가) 교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으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출산휴가를 부여하며,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p> <p>제2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교직원이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다.</p> <p>제 25 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교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다.</p>	<p>용어 수정</p> <p>용어 수정</p> <p>관련법령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개정)</p> <p>관련법령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9조의4 개정)</p> <p>관련법령 개정 (제22조의2제1항 개정, 제22조의2제2항 및 제4항 신설)</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25조(보건휴가) 여성 교직원이 <u>보건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부여한다.</u></p> <p>제26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생략 제27조(휴가기간의 초과): 생략 제28조(사직원): 생략 제29조(사무인계): 생략</p>	<p>제26조(여성 보건휴가) 여성 교직원은 <u>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 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u></p> <p>제27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현행과 동일 제28조(휴가기간의 초과): 현행과 동일 제29조(사직원): 현행과 동일 제30조(사무인계): 현행과 동일</p>	<p>휴가 본연의 목적을 명확화</p>

(별표 1) 경조휴가일수표

현행			개정(안)			비고
구 분	대 상	일 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결 혼	본인	5	주5일제 근무 변화에 따른 휴가 일수 현실화 및 사망 특별휴가 범위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확대
	자녀	2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입 양	본인	20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출 산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사 망	배우자	7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배우자	2	①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본인 결혼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의 범위(1회 분할가능)에서 사용가능.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2	②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더할 수 있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단,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